2022년 중국(정저우) 수출테스트베드 지원 사업

(재)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**전국소재 창업기업**의 수출 개척 및 **중국현지** 시범판매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3월 7일

(재)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

모집개요

- □ 사업개요: 해외 바이어 100% 선매입* 조건으로 중국(정저우) 현지
 온·오프라인 판촉전 실시(30일), 중국 수출 거점 지원
 - * 현지품평회 및 화상상담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후 수출계약
 - * 판매대금 50% 선결제, 선적완료(B/L제출)시 잔여 50% 송금
- □ **판매지역**: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*
 - * 인구 1억명의 중부지역 최대 소비시장, GDP총액 중국 내 5위(중부 6개성 중 1위), 연속 중국 평균성장률 상회, 육상물류 전국5위, 항공물류 6위의 내륙 물류 거점
- □ **모집분야**: 현지 오프라인·온라인몰에서 판매 가능한 생활소비재 분야 (식품, 화장품, 위생용품 등)
- □ **참여대상**: 재고 부담 없이 중국 내륙 시장 수출 가능성을 확인 해보고 싶은 창업기업(지역제한 없음/ 수출상품, 회사소개서 보유필수) ※ 자격 요건 등 뒷장 유의사항 참고
- □ 선정규모 : 30개사 내외*
 - * 1:1 화상상담 + 현지 샘플심사 → 시범판매 참여사 선별

2 지원내용

□ 현지 품평회·화상상담회(30개사) → 수출계약(12개사 이상)

- ㅇ 中 허난성 유력 바이어사 대상 현지품평회 및 화상상담회 개최
 - 先 회사(제품)소개서 등 검토 後 샘플요청
 - 샘플 국제운송비 지원(국내 지정장소→중국) ※ 국내운송비는 지원대상이 아님
 - 참여기업 중 <u>우수판정 기업은</u> 납품조건 조율 후 최종 수출계약 체결 (바이어 완매입으로 기업리스크↓ 계약체결 시 50%, 선적완료 시 50%지급)
 - 수출계약 후 해상 물류비용은 바이어가 부담
 - ※ FOB 계약 조건 원칙으로 업체들은 바이어가 지정하는 인천/평택 항구의 창고로 보내는 비용만 본인부담(단, 바이어와 계약협상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)

□ 중국 수입통관 과정 1:1 컨설팅

- (식품)식품수입 가능여부 검토, 성분표시·중문라벨링, 등록/신고지원, (식품外)중국 수출 가능여부 검토, 중문라벨링 등 중국 수출 관련 행 정업무 전반, 중국 수출관련 세관심사 대응 및 중국 법령준수·통관을 위한 1:1 컨설팅 제공
 - ※ 참고 ① 2022년 1월부터 식품은 중국 해관에 해외 생산 공장 등록 후 수출가능
 ② 중문라벨 견본 aT 현지화 지원 사업 이용 시 자부담 농식품 10%, 수산품 20%
 (중국 해관등록과 중문라벨의 경우 aT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예정)

□ 특별기획 온오프 판촉전(30일 간)

- (오프라인 판촉) 전국 단위의 도매 유통망 + 파트너 대형유통망 대상
 - 기간 : 하반기 중 한 달간 실시(온라인 판촉 일정과 연계)
 - 중부 2-3선 내수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는 **식품, 이미용 위주의 생활** 소비재를 바이어가 선정하여, 오프라인 판촉행사 추진
 - (온라인 판촉) 바이어 주요 거래 온라인 플랫폼 + 타오바오, 징동 등 Shop-in-Shop 형태로 운영 중인 플랫폼 대상
 - 기간 : 하반기 중 2주간 실시 (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)
 - 오프라인 판촉전과 연계하여 사업 창출 시너지 효과 제고

3 참가신청

□ 신청자격: 수출 상품을 보유하고, 공고일 기준('22.3.7.) 업력 7년 이내인 창업 기업 (지역제한 없음), 필수서류 제출자

〈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〉

구분	확인서류 및 기준	참고
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	'15.3.8. 이후 창업
법인사업자	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	15.5.0. 이후 경급

□ 신청기간: 2022. 3. 28.(월) ~ 3. 31.(목) 17:00까지

※ 모집 수가 정원 1배수에 미달될 경우 연장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(trade@ccei.kr)

□ 제출서류(필수사항)

구분	번호	첨부 자료	비고
필수첨부	1	참가 신청서	
	2	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(*법인기업의 경우)	
	3	2021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	
	4	품목제조보고서 (성분배합비)	
	5	외포장지전개도 + 상품 전체 사진	식품 기업
	6	제조공정도	해당
	7	영양성분성적서	
	8	중국 화장품위생허가증	화장품 기업
	9	국문 카탈로그 (회사(제품)소개서)	
선택첨부	10	영문, 중문 카탈로그 (회사(제품)소개서)_보유 시 모두 제출	
	11	기타 업체 참고용 홍보동영상 자료 등	

□ **선정기준**: 해외수출에 대한 적극성, 제품 혁신성, 해외(중국)시장 경쟁력, 수출 현실가능성(통관, 판매), 역량 등 평가 □ 추진일정 (예정) ※ 코로나19 상황 및 수출 품목,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

구분	일정	내용	비고
1	03.07.(월)~03.31.(목)	전국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게시	
2	03.28.(월)~03.31.(목)	참가 신청서 접수 (이메일)	
3	04.01.(금)~04.08.(금)	참가신청서 및 회사 소개서 검토 및 선발심사	
4	04.11.(월)~04.29.(금)	해외바이어 & 업체별 화상 상담회	필 의생기
5	05.02.(월)~05.27.(금)	선정기업 샘플발송 및 센터 협약체결(OT)	
6	05.30.(월)~06.24.(금)	업체별 1:1 통관 등 컨설팅 교육	
7	계약업체별 계약체결 시기 상이	해외바이어 & 업체별 수출 계약(선금50%)	
8	07.04.(월)~09.30.(금)	수출품목 선적 및 판촉준비 (잔금50%)	
9	10.01.(토)~10.31.(월)	현지 온오프 판촉전 개최	
10	11.01(화)~11.30(수)	후속 지원 검토 및 추가발주 모니터링 계속	

유의사항

- □ **[참여자격]** 정식 중국 수입통관이 가능한 제품만 사업에 참여 가능
 - 통관자격 획득에 평균 **3개월 이상** 소요되는 제품(특수화장품, 분유 등)이나 보관이 어려운 (냉장, 냉동 등)제품 또는 비슷한 경우는 사업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
 - **평균 2개월 이내** 통관 자격 획득이 가능한 품목(일반식품, 소비재 등)은 **참여 가능** ※ 중국 해관에 식품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 공장 등록 후 수출 가능
- □ [판매권한] 중국 내 대리상이 판매수권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는 반 드시 사전 통지 필요
- □ [위험부담] 알러지 등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상표 ·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시 법적·물적 책임은 참여 기업(제조기업)에게 있음
- □ **[참가의무]** 참여기업은 주관 기관과 통관 컨설팅 기관의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, 최종선발 이후 참여기업은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함

붙임 1. 참가신청서 양식 1부.